의 안 번 호

1387

【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17. 9. 6.(수)

나. 제 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9. 8.(금)

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9. 19.(화)

2. 제안이유

- 가.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(수영장, 테니스장) 협약을 통해 우리 구에서 운영 함에 따라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
- 나. 테니스장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현실화 하며, 알기 쉬운 법 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체육시설 정의 규정에 "수영장" 명시(안 제2조제1호)
- 나.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 반영 정비(안 제12조)
- 다. 중구수영장, 중구테니스장 명칭 및 소재지 등 신설(안 별표 1)
- 라. 테니스장 및 수영장 전용사용료 정비·신설(안 별표 2)
 - 1) 테니스장 코트당 사용료 : 5,000원 \Rightarrow 10,000원
 - 2) 테니스장 월회원 사용료
 - O 개 인 : 15,000원 ⇒ 30,000원(중구민), 40,000원(중구외 주민)
 - 클 럽 : 15,000원 ⇒ 20,000원
 - 3) 중구테니스장 사용료 신설 : 주간 20,000원, 야간 30,000원
 - 4) 중구수영장 사용료 신설
 - O 1일 입장료 : 성인 5,000원, 청소년 4,500원, 어린이 4,000원
 - 월 회원 : 성인 60,000원, 청소년 55,000원, 어린이 50,000원
- 마. 테니스장 조명시설 사용료 현실화(안 별표 3)
 - 1) 5,000원(3시간 이내) ⇒ 5,000원(1시간)
- 바. 수영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신설(안 별표 4)

- 1) 성인 70,000원, 청소년 65,000원, 어린이 60,000원 사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- **4. 근거법규**: 「지방자치법」제136조 및 제139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2017. 7. 25.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(수영장, 테니스장) 위탁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운영 근거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,
- O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 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